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It's JEJU
제주마씸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6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음력 3월 23일)

‘이해충돌방지’ 안지키나 못지키나

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에 사업자 위촉 운영
기금심의위 위원이 용역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제주도, 사적이익추구 차단에 안일하게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해충돌방지’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도 이에 준하는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2년 8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해체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의 공법 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했다.

해체심의를 하는 제주도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철거공법 등이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대부분 심의는 해체 공사업체 선정전에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건축해체안전전문위원회에 도내 해체 철거공사업체 대표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것.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제주도가 의원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해충돌에 걸린다. 해당 위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이 업체에 공사를 안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금 투입 대상으로 선정된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금 대상 사업을 심의한 위원이 기금투입 용역에 자문료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해체 계획서에 이미 철거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본인의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에서 빠지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금 사업 용역자문과 관련해서는 “위원이 직접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답변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꿀 따먹는 직박구리 11일 제주시 오라1동의 한 감귤원에서 직박구리 한마리가 감귤꽃 꿀을 따먹고 있다. 직박구리는 참새목 직박구리과에 속한 조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 중 하나다. 이상국기자

격리·마스크 해제… 3년 4개월만의 ‘엔데믹’

정부, 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등 계획 발표
‘7일 격리’→‘5일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입국 후 PCR 종료… 치료·생활비 지원 당분간 유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5일 권고로 바뀐다.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적용되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역시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서 제주 역시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2020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보면 1177일 만이다.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대규모 풍력발전 사전 정한 입지서만 추진

도, 풍력개발 계획 수정·보완…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제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은 공공에서 사전에 정한 입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공공주도2.0 풍력개발 계획’을 보완해 조례 개정 및 고시,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풍력개발의 경우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과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수립, 사전 발굴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입지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또 공공이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진행됐던 사업자 공모 단계를 사업 초반으로 앞당겨 제주에너지공사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풍력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성 사전 검토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한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대로기자

대형 화재 막은 의용소방대원… 4면 /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이견… 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